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2. 9 선고 2020가단12840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지훈

변 론 종 결 2021. 11. 24.

판 결 선 고 2022. 2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69,855,567원 및 그 중 41,000,000원에 대하여 2020. 5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.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주식회사 C은 2017. 5. 4.경 피고에게 41,000,000원을 대출기간 72개월, 이자 연 13.5%, 연체이자 연 25.5%로 정하여 대여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대여금 채권’이라 한다).나. 주식회사 C은 2017. 12. 20. D 주식회사에, D 주식회사는 2019. 12. 13.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각 양도하고,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.

다.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20. 5. 26. 현재 원금 41,000,000원과 2019. 11. 1.부터 2020. 5. 26.까지 이자 합계 28,855,567원(25,000,444원 + 3,855,123원)이 남아있다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5 내지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9,855,567원 및 그 중 41,000,000원에 대하여 2020. 5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6.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윤아